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22
----------	--------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할인 항목 중 다등이 적용 범위 수정 (제13조의3제1항제9호)
- 나. 할인 항목 중 병역명문가 감면혜택 신설 (제13조의3제1항제18호)
- 다. 할인 항목 중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 형태 제외 신설 (제13조의3제3항)
- 라.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센터 사용료 인상 (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3. 8. 24.~9. 1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시”를 “오후 10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사용계약 체결 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9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③ 제1항의 할인은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4.20., 2020.7.9.>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제1호. 대관료

나목. 별표 4) 체육관 기본대관료에서 종합체육관의 “50,000”을 “70,000”으로 소체육관의 “10,000”을 “20,000”으로 하며, “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을 추가한다.

4) 체육관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	1시간	70,000
소체육관	1시간	20,000
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		

별표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에서 스튜디오1(다목적홀) 및 스튜디오 2(문화동 2층)의 “30,000”을 각각 “35,000”으로 한다.

스튜디오3(문화동 3층)에서 연습의 “35,000”을 “40,000”으로 공연의 “55,000”을 “60,000”으로 행사의 “85,000”을 “100,000”으로 전시의 “1일”을 “1시간”으로 하며 “150,000”을 “25,000”으로 한다.

별표 6)의 전시실(갤러리 맥)의 기본대관료란 중 “15,000”을 “20,000”으로 하고, 같은 6) 공연장테라스(3층)의 1일(주말)을 삭제하며, 같은 표 7) 시설 대관차량의 소극장 체육시설의 주차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스튜디오1(다목적홀)		1시간	35,000
스튜디오2(문화동 2층)		1시간	35,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1시간	40,000
	공연	1시간	60,000
	행사	1시간	100,000
	전시	1시간	25,000
연습실		1시간	15,000
전시실(갤러리 맥)		1시간	20,000
공연장테라스(3층)		1일(평일)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갤러리 대관 시에만 대관 가능 · 운영기간 · 시간: 4월~9월, 09:00~18:00 	

7)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일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	대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 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소극장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3대까지 무료
문화·체육프로그램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당 500원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까지 적용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까지 적용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무료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시간만큼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은 1시간 무료

별표 제2호.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목 개별기준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정 2021.12.30.>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비고
문화강좌 프로그램	일반과정	10,000 ~ 100,000	월 기준
	전문과정	40,000 ~ 200,000	
	단기과정(회당)	2,000 ~ 2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20,000 ~ 300,000	
	중·고생이하	15,000 ~ 300,000	
	1일 입장(회당)	2,000 ~ 10,000	

별표 2) 가)의 사용료의 강습료란 중 “80,000”을 “100,000”으로 하고, 같은 가) 기타의 강습료란 기호(·) 중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같은 기호(·) 중 “20퍼센트”를 “20퍼센트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2) 나),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라) 개인사물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영 <개정 2021.12.30.>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수영 이용료		소그룹지도 강습료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10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가족수영·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 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지도	개인지도	1일 입장
사용료	35,000 ~ 60,000	25,000 ~ 55,000	100,000 ~ 200,000	25,000 ~ 50,000 (1시간/회)	1,000 ~ 10,000
기타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다) 실내골프 <개정 2021.12.30.>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1일 입장		
			1개월	1회	스크린 타석	기본2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150,000	30,000 ~50,0 00	7,000 ~ 20,000	6,000 ~ 10,000	2,000 ~ 4,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라) 개인사물함

(단위 : 원/월)

구분	이용료
개인사물함	3,000 ~ 1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u>10시</u>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u>사용계약 체결 시 납부</u></p> <p>② (생략)</p> <p>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사용시간) ① ----- ----- <u>오후 10시</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3(할인) ① ----- ----- ----- ----- ----- -----.</p>

다.

1. ~ 8. (생략)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 17.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1. ~ 8. (현행과 같음)

9. -----

<후단 삭제>

10. ~ 17. (현행과 같음)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할인은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 대관료 가목. 일반기준

1) ~ 9) (생략)

나목. 개별기준

4) 체육관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	1시간	50,000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 대관료 가목. 일반기준

1) ~ 9) (현행과 같음)

나목. 개별기준

4) 체육관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	1시간	70,000

소체육관	1시간	10,000
------	-----	--------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스튜디오1 (다목적홀)	1시간	30,000
스튜디오2 (문화동 2층)	1시간	3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1시간 35,000
	공연	1시간 55,000
	행사	1시간 85,000
	전시	1일 150,000
연습실	1시간	15,000
전시실(갤러리 맥)	1시간	15,000
공연장테라스(3층)	1일(평일)	300,000
	1일(주말)	330,000
	(생략)	

7)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일반차량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	-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	대극장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소극장 체육시설 - 차량 3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

소체육관	1시간	20,000
------	-----	--------

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스튜디오1 (다목적홀)	1시간	35,000
스튜디오2 (문화동 2층)	1시간	35,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1시간 40,000
	공연	1시간 60,000
	행사	1시간 100,000
	전시	1시간 25,000
연습실	1시간	15,000
전시실(갤러리 맥)	1시간	20,000
공연장테라스(3층)	1일(평일)	300,000
	<삭제>	
	(현행과 같음)	

7)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일반차량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	-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	대극장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 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소극장 체육시설 - 차량 3대까지 무료 <삭제>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30분당 500원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까지 적용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까지 적용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

	<p>확인”에 한하여 무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신설> - <신설>
--	--

	<p>확인”에 한하여 무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 시간에 한하여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 1시간 무료
--	---

제2호.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목. 개별기준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비고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40,000	월 기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이하	25,000 ~ 200,000	
유아·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문화예술전문과정		40,000 ~ 200,000	
단기 프로그램		2,000 ~ 20,000	일 기준

2)체육시설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수영 이용료		그룹지도 강습료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 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가족수영·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제2호.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목. 개별기준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비고
문화강좌 프로그램	일반과정	10,000~100,000	월 기준
	전문과정	40,000~200,000	
	단기과정(회당)	2,000~2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20,000~300,000	
	중·고생이하	15,000~300,000	
	1일 입장(회당)	2,000~10,000	

2)체육시설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수영 이용료		소그룹지도 강습료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10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 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가족수영·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 지도	개인 지도	1일 입장
사용료		(생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스크린 타석	1일 입장	
					기본 2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1회)	7,000 ~ 20,000	6,000	2,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 					

라) 개인사물함

<신설>

· 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 지도	개인 지도	1일 입장
사용료	(현행과 같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1일 입장		
			1개월	1회	스크린 타석	기본 2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30,000 ~ 50,000	7,000 ~ 20,000	6,000 ~ 10,000	2,000 ~ 4,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라) 개인사물함

(단위 : 원/월)

구분	이용료
개인사물함	3,000 ~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3조의3(할인)
- 시행규칙안 제22조의3(사용료의 할인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13조의3(할인) 및 시행규칙안 제22조의3(사용료의 할인율)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전형준
연 락 처	02-3153-8356